## 과학기술정보사업에서 특허문헌의 리용과 특성

백 석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과학기술정보사업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과학기술정보사업을 잘하여야 적은 밀천과 품을 들여 과학기술발전에 절실히 요구되는 귀중한 자료들을 얻을수 있습니다.》 (《김정일선집》 중보판 제15권 501폐지)

오늘날 매개 나라와 민족의 발전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은 비상히 높아지고있다.

이러한 현실적요구에 맞게 나라의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과학기술 정보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사업에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특허정보를 잘 리용하는것이다.

특허정보는 새롭게 발명되여 특허권으로 보호되는 과학기술성과와 함께 그에 대한 소유권과 관련된 정보들이다.

특허정보는 특허문헌에 반영되며 특허문헌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제공된다.

특허문헌은 매개 나라의 특허행정기관과 국제적인 특허기관들이 특허신청을 접수, 심의, 비준하고 처리하는 과정에 특허기술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기록한 문건이다. 세계적으로 특허문헌은 정부의 공업소유권사업담당기관의 발명, 실용신형, 공업도안에 대한 권리(발명권, 특허권, 공업도안권 등)의 법적상태와 해당 발명기술, 공업도안에 대하여 공개하는 기술정보자료들의 총칭으로 통하고있다.

특허문헌은 일반적으로 해당 나라의 특허행정기관의 공식출판물로서 특허통보, 공 보나 특허신청설명서, 공업도안설명서, 실용신형설명서, 특허색인, 특허권변경통보 등으로 이루어진다.

과학기술과 생산이 밀접히 결합되고 과학기술이 나라와 민족의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있는 오늘 특허문헌의 의의는 더욱 커지고있으며 사회경제발전을 이룩하는데서 큰 역할을 수행하고있다.

과학기술정보사업에서 특허문헌은 우선 새로운 발명기술을 공개하는데 리용된다.

특허문헌을 통하여 특허를 받은 새로운 기술성과들이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된다. 발명가들은 특허문헌을 통하여 이미 개발된 기술들을 료해하고 발명의 중복을 피할수 있으며 기술수요자들은 특허문헌의 료해를 통하여 필요한 기술을 선정할수 있게 된다.

특허문헌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보다 원만히 해결해나갈수 있다.

과학기술정보사업에서 특허문헌은 또한 특허기술에 대한 법적보호를 실시하는 근거 문건으로 리용된다.

특허기술의 사용범위와 특허권의 효력기간, 특허양도상태 등이 특허문헌에 반영되게 되며 이에 근거하여 특허침해를 비롯한 법적보호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이 처리된다. 즉 특허문헌을 통하여 해당 특허기술의 사용범위를 확정하게 되며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위법행위를 피할수 있으며 법기관이 법적보호 및 특허기술과 관련한 분쟁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 특허문헌을 통하여 해당 기술의 법률상태를 잘 알아야 특허기술의 리용에서 제 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다.

과학기술정보사업에서 특허문헌은 또한 특허기술의 과학적인 심의를 보장하며 국제

적인 과학기술교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원천으로 리용된다.

매개 나라의 발명등록기관들과 특허대리기관들은 신청된 기술에 대한 심의를 통하여 신청을 부결하거나 등록을 결정한다. 심의는 제기된 기술이 선행기술에 대하여 새롭게 해 결한 내용과 발명수준, 경제적효과성이 있는가를 검토하는 과정을 거친다. 여기서 선차적 으로 나서는 문제는 선행기술에 대하여 충분히 료해하는것이다. 이것은 특허문헌에 대한 검색을 통하여 진행된다. 이로부터 특허문헌은 특허심의를 위한 기초자료로 된다.

이로부터 특허협조동맹에서는 매개 나라 발명등록기관들이 보유하고있어야 할 최소 한의 특허문헌량을 규정하고있다.

특허문헌은 기술정보와 함께 법적보호와 관련한 정보들을 포괄하는것으로 하여 대외적인 과학기술교류에서 중요한 정보원천으로 된다.

특허기술의 경제적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나라들사이의 기술류통이 특허권제도를 통하여 상업적인 방법으로 실현되는 조건에서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서 특허문헌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특허문헌은 다른 문헌들과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있다.

특허문헌의 특성은 우선 최신과학기술성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문헌이라는것이다. 특허문헌은 특허정보를 다루는 문헌이며 새로운 과학기술성과만을 담고있다.

특허기술은 이미 알려진 기술에 비하여 새롭게 해결한것 다시말하여 세계에서 처음 으로 나온 새로운 기술이다.

특허권을 받게 되는 발명기술은 이전에 그 누구도 사용한적이 없을뿐아니라 국내외의 출판물에도 발표된적이 없어야 한다. 이미 공개되거나 리용되고있으면 그러한 기술은 특허를 받지 못한다. 특허심의에서 선행기술에 대하여 새롭게 해결한 내용에 대한 요구는 세계적으로 공통적이며 그 요구수준도 높다. 해당 특허심의기관들에서는 이전의 기술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신청된 기술이 특허를 받을수 있는가를 심의한다. 이와 함께 대다수 나라들에서는 발명등록신청을 해당 발명심의등록기관에 먼저 접수시켰다는것을 인정하고 우선적으로 심의받을수 있는 권리인 우선권을 준다.

우선권은 동시에 서로 류사한 기술에 대한 등록신청이 제기될 때 그가운데서 어느것이 실지로 먼저 발명된 기술인가를 판단해주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므로 특허문헌에는 사람들이 아직 알지 못하고있는 새로운 과학기술성과들이 담 겨지게 된다.

특허문헌이 최신과학기술성과를 알려주는것으로 하여 세계적인 과학기술의 발전수준과 동향을 비롯하여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는데서 특허문헌은 매우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정보원천으로 되고있다.

특허문헌의 특성은 또한 실지로 생산에 리용될수 있는 기술정보들을 담고있다는것이다. 특허는 자연법칙 그자체나 사회과학, 경제법칙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특허에는 일상생활용품 및 식료품 등의 제작 및 제조기술로부터 첨단에 이르 기까지 다양한 과학기술적내용이 다 포함되며 이러한 정보들은 실지 생산활동에 리용될 수 있는 실용적인 정보들이다.

특허를 받기 위하여서는 새로운 기술을 충분히 담고있어야 하며 그 기술이 공업에 실질적으로 도입될수 있어야 한다. 특허권을 받을수 있는 조건에서 생산에 도입할수 있는 가 없는가 하는것은 중요한 조건의 하나이다. 여기서 생산에 도입할수 있다는것은 해당 기술을 생산에 받아들일 때 일정한 경제적 리득을 얻을수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기술경제적으로 리득을 볼수 없거나 공업적으로 도 입될수 없는 기술은 특허를 받지 못한다.

특허문헌은 생산에 도입되여 일정한 경제적리득을 가져오는 기술정보들을 취급하는 것으로 하여 다른 문헌들과 구별된다.

일반문헌들은 물론 과학기술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문헌인 경우에도 특허문헌과 같이 전문적으로 공업생산에 도입리용될수 있는 기술정보만을 취급하지는 않는다.

특허문헌에는 특허권을 받은 기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술적특징, 생산방법과 기술공정, 실험측정수단 등이 밝혀져있다. 그리고 해당 기술의 목적과 구성, 기술분야와 배경기술, 이미 있던 기술과의 차이, 실시방식과 방안 등이 다 들어있다. 이로부터 특허문헌에 반영된 기술정보를 통하여 발명가가 제안한 기술을 충분히 료해할수 있으며 새로운 제품생산에 실질적으로 리용할수 있다. 이러한 정보들은 공업에 도입되여 생산과 경영활동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나타내는 정보들인것으로 하여 경제적가치가 있는 정보들로 된다.

특허문헌의 특성은 또한 기술정보와 함께 그 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법률적인 정보들을 포함하고있는것이다.

특허문헌에는 발명의 내용으로 되는 과학기술정보들과 함께 발명가에게 부여되는 권리에 대한 정보 다시말하여 특허권에 대한 정보들도 반영된다.

특허정보는 기술정보이면서도 그 기술에 부여된 독점권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있다. 특허문헌에 들어있는 특허권에 대한 정보에는 특허권소유자, 특허보호기간, 특허기술 의 사용범위, 특허권양도상태 등에 대한 정보들이 속한다. 그리고 특허보호료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 등 여러가지 원인에 의하여 효력기간이 앞당겨진 특허와 특허보호기 간이 상실된 특허에 대한 정보도 특허문헌에 담겨진다.

특허문헌에 서술되여있는 특허기술의 주장범위는 기술의 법률상태를 나타내는 정 보이다.

주장범위는 특허심의에서 특허자격심의의 기초로 되는것과 함께 발명가가 수여받은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기술범위로 된다.

과학기술정보와 함께 그 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법률적인 정보들을 취급하는 문헌은 특허문헌밖에 없다.

특허문헌의 특성은 또한 문헌의 서지사항과 분류가 세계적으로 통일되여있는것이다.

특허문헌은 보통 도서나 잡지와는 달리 내용이 간결하면서도 전문화되여있을뿐아니라 발표되는 건수가 대단히 많다. 따라서 일반도서나 잡지와는 달리 특허에 대한 일정한 약속기호가 없이는 수많은 특허정보들을 접수하여 처리할수 없으며 특허문헌들에 대한 관리와 리용을 제대로 할수 없다.

특허제도가 국제적으로 보편화되고 더욱 발전하면서 이러한 결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특허의 분류와 특허문헌의 서지사항을 세계적으로 통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진행하고있다.

세계적으로 특허분류를 국제특허분류표(IPC)에 따라 진행하며 특허문헌의 서지사항은 서지사항식별기호를 쓰고있다. 국제특허분류표는 특허기술의 과학기술적내용을 그 속성과 범주에 따라 문자와 수자, 기호로 구분하여 체계화한 국제적으로 약속된 목록이다. 여기서는 모든 특허를 부문, 부류, 보조부류, 기본항목, 보조항목에 의하여 분류한다.

국제특허분류표는 세계지적소유권기구의 주관밑에 주체57(1968)년에 제1판이 출판

되였으며 5년을 주기로 보충갱신되고있으며 주체95(2006)년 1월 1일부터는 제8판을 리용하고있다. 국제특허분류표는 특허문헌에 포함된 기술적 및 법적통보를 쉽게 그리고 빨리 얻기 위한 기본수단으로 될뿐아니라 해당 기술분야의 선행기술을 조사하고 특허정보자료를 보급하기 위한 자료기지구축수단으로 된다.

특허문헌의 서지사항도 여러 나라들에서 각이한 언어와 여러가지 양식과 항목, 각이한 기호로 표시하는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통일적인 서지사항식별기호를 제정하고 필수적인 최소한도의 서지사항을 규정하였다. 최소한도의 서지사항은 특허신청자이름, 발명자이름, 국제특허분류 등 13가지로 되여있다. 따라서 특허문헌을 통한 정보의 수집과 검색, 봉사 등 모든 리용은 다른 문헌들에 비하여 편리하다.

해당 기술의 력사와 발전추세, 전망 등을 전반적으로 료해하는데서도 특허문헌을 효 과적으로 리용할수 있다.

특허문헌은 특허제도가 수립된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특허정보를 런속적으로, 체계적으로 담고있다. 따라서 새로운 발명기술이 창조된 때로부터 그 기술의 발전과정이 다 담겨져있으므로 특허문헌을 통하여 해당 기술의 발전과정과 앞으로의 전망 등을 깊이 연구할수 있다.

특허문헌의 특성은 또한 같은 기술정보들이 중복되여 들어있는것이다.

특허권은 어느 한 나라의 법에 따라 그 나라의 해당 기관이 신청자에게 부여한 권리로서 그것을 부여한 나라에서만 효력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서는 효력을 가질수 없다. 그리므로 특허권을 부여한 나라에서 기술침해현상이 나타나면 법적보호를 요구할수 있지만다른 나라에서 기술침해현상이 나타나면 그 나라의 법적보호를 받을수 없게 된다. 이로부터 발명가들은 자기의 특허기술에 대한 침해가 많이 나타날수 있는 나라들에 특허등록을 신청하여 특허권을 받음으로써 국제적인 범위에서 법적보호를 받으려고 한다. 결과 같은 발명에 대한 정보가 여러 나라들의 특허문헌에 반영되게 된다.

자료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수많은 특허문헌이 출판되는데 그중에서 약 60%가 중복되여있다고 한다. 이렇게 하나의 발명이 여러 나라의 특허문헌들에 담겨지는것으로 하여 특허문헌에는 중복되는 기술정보들이 많이 들어있다.

우리는 특허문헌의 특성을 잘 알고 특허정보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나라의 과학기 술을 빨리 발전시킴으로써 사회주의경제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